

하나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조(회원) ① (생략) ② <u>본인회원이란 금융기관에 결제계좌를 가지고 있는 예금주가 이 약관을 승인하고 하나카드(주)(이하 "카드사"라 함)에 하나체크카드 또는 하나비씨체크카드(이하 "카드"라 함)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의 심사를 거쳐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u> ③ <u>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의 가족으로서 대금의 지급, 결제계좌에서의 현금인출 등 카드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u> ④ (생략) (신 설) (신 설)	제1조(용어의 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u>본인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하나카드(주)(이하 "카드사"라 함)에 하나체크카드 또는 하나비씨체크카드(이하 "카드"라 함)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의 심사를 거쳐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u> ③ <u>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의 가족으로서 대금의 지급 등 카드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u> ④ (현행과 같음) ⑤ <u>결제계좌란 회원이 발급받은 카드와 연계되어 카드 이용대금이 결제되는 본인회원 명의의 계좌 혹은 계정을 말합니다.</u> 1. <u>본인회원 명의 금융기관의 예금계좌</u> 2. <u>금융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결제계정</u> ⑥ <u>소액신용한도란 예금계좌의 지급 가능 잔액(대출약정</u>	조 명칭 변경 선불전자지급수단 (ex 하나머니) 상품 안내장 개정에 따 른 회원 약관 개정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 선불전자지급수단 (ex 하나머니) 상품 안내장 개정에 따 른 회원 약관 개정 소액신용한도 용어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계좌는 약정 인출가능 금액 포함) 또는 결제계정의 잔액이 부족할 경우 카드사가 회원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한 신용공여 한도를 말합니다. 단, 하나비씨체크카드는 소액신용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및 적용 명확화
제4조(카드의 관리) ① ~ ② (생략) ③ 회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카드 및 갱신·대체·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주))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④ 제①항 내지 제③항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4조(카드의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카드 및 갱신·대체·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④ 제①항 내지 제③항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비현실적인 카드 반납 문구 개정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책임만 부담토록 하는 단서 추가
제5조(카드이용 정지, 해지) ① ~ ④ (생략) ⑤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는 서면, 자동응답시스템(ARS), <u>모사전송</u> 등의 방법으로 회원의 해지의사를 확인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카드이용 정지, 해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는 서면, 자동응답시스템(ARS), <u>팩스(FAX)</u> 등의 방법으로 회원의 해지의사를 확인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⑥ 제①항, 제③항 및 제⑤항의 사유로 회원의 카드이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u>반납</u> 하고, 카드는 그날까지의 채무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⑥ 제①항, 제③항 및 제⑤항의 사유로 회원의 카드이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u>폐기</u> 하고, 카드는 그날까지의 채무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카드 반납 문구 개정
제7조(카드의 해외이용 등) ① (생략) ②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u>약관</u> 에 따르며, 카드사는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시 동 <u>약관</u> 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7조(카드의 해외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u>규약</u> 에 따르며, 카드사는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시 동 <u>규약</u> 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용어 정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준용)
제8조(카드의 이용한도) ① 회원의 카드이용한도는 카드사가 정하여 카드발급시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송부 시 통보하며, 동 한도는 이용 당시의 <u>결제계좌의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u>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생략) ③ 회원은 이용대금이 제①항의 한도 또는 <u>예금잔액을</u>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②항의 신용구매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카드의 이용한도) ① 회원의 카드이용한도는 카드사가 정하여 카드발급시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송부 시 통보하며, 동 한도는 이용 당시의 <u>결제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u>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원은 이용대금이 제①항의 한도 또는 <u>결제계좌의 잔액을</u>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②항의 신용구매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조⑤ 결제계좌 용어 정의에 따른 문구 개정 1조⑤ 결제계좌 용어 정의에 따른 문구 개정
제9조(현금자동지급기의 이용) ① (생략) <u>(신 설)</u>	제9조(현금자동지급기의 이용) ① (현행과 같음) <u>1. 본인회원 명의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현금인출과 관련하여서는 해당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약관이 적</u>	예금계좌 현금인출 관련 약관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신 설) ② (생략) ③ 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인출을 할 경우 비밀번호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u>용됩니다.</u> <u>2. 금융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결제계정은 체크카드를 통해 국내 현금인출 이용이 불가합니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선불전자지급수단 (ex 하나머니) 상품 안내장 개정에 따른 회원 약관 개정 결제계좌를 개설한 해당 금융기관의 약관이 적용되므로 조항 삭제
제11조(대금결제) <u>① 카드사는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금을 회원의 지정 금융기관 결제계좌에서 출금하여 결제하고 출금사실을 회원의 결제계좌에 기장하여 드립니다.</u> ② (생략) ③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하고, 카드승인일자의 카드사가 지정한 은행이 고시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카드승인일에 회원의 계좌잔액에서 지급정지 됩니다. 이후 매출표가 접수되면	제11조(대금결제) <u>① 카드의 이용대금은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거래 즉시 인출하거나 차감됩니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됩니다. <u>1. 예금계좌가 하나은행인 경우, 카드승인일자에 카드사가 지정한 은행이 고시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금</u>	선불전자지급수단 (ex 하나머니) 상품 안내장 개정에 따른 회원 약관 개정 결제계좌별 처리절차 명확화 선불전자지급수단 (ex 하나머니) 상품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u>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매출접수일자</u>의 카드사 지정 은행이 고시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회원의 계좌잔액에서 원화금액을 인출합니다. 매출표가 접수되어 금액이 인출됨과 동시에 지급정지가 해제되며, 지급정지 금액과 인출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u>④ 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승인금액 100만원 이상의 거래(단, T&E업종 제외), 또는 카드사가 정한 특정 브랜드 및 상품의 카드이용대금은 마스터, 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승인일자의 카드사 지정 은행이 고시한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되어 카드 승인 시 회원의 결제계좌로부터 즉시 인출됩니다.</u> <u>*T&E업종: Travel and Entertainment 업종, 여행과 여가 관련 업종</u> (항공, 호텔, 숙박, 렌터카 외) <u>⑤ 해외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대금은 마스터, 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승인일자의 카드사 지정 은행이 고시한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되어 카드 승인 시 회원의 결제계좌로부터 인출됩니다.</u> <u>⑥ 제③항~제⑤항의 인출금액에는 마스터, 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와 국내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료가 포함</u>	<u>액으로 카드승인일에 회원의 계좌잔액에서 지급정지됩니다. 이후 매출표가 접수되면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매출접수일자</u>의 카드사 지정 은행이 고시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회원의 계좌잔액에서 원화금액을 인출합니다. 매출표가 접수되어 금액이 인출됨과 동시에 지급정지가 해제되며, 지급정지 금액과 인출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1회 승인금액 100만원 이상의 거래(단, T&E업종 제외), 또는 카드사가 정한 특정 브랜드 및 상품의 카드이용대금은 카드승인일자에 카드사 지정 은행이 고시한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되어 카드 승인 시 회원의 예금계좌에서 즉시 인출됩니다. <u>*T&E업종: Travel and Entertainment 업종, 여행과 여가 관련 업종</u> (항공, 호텔, 숙박, 렌터카 외) <u>2. 예금계좌가 하나은행이 아닌 경우, 카드승인일자에 카드사가 지정한 은행이 고시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카드승인일에 회원의 예금계좌에서 즉시 인출됩니다.</u> <u>④ 해외 현금자동지급기는 예금계좌가 하나은행인 경우 이용 가능하며 모든 카드이용대금은 마스터, 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승인일자에 카드사 지정 은행이 고시한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되어 카드 승인 시 회원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됩니다.</u>	안내장 개정에 따른 회원 약관 개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됩니다.	⑤ <u>결제계좌가 결제계정인 경우 해외가맹점 및 해외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한 카드이용대금은 승인시점에 결제계정의 잔액에서 즉시 차감됩니다. 단, 별도 상품약관 등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u> ⑥ <u>제③항~제⑤항의 인출 및 차감금액에는 마스터, 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와 국내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료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국내 카드사의 해외서비스수료는 국제브랜드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u>	
제13조(기한이익의 상실) <u>신용구매한도가 부여된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며, 이 때에는 카드사에 대한 채무 전액을 카드사의 지급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u> <u>1.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u> <u>2. 제5조에서 정한 카드이용 정지사유로 카드이용이 정지된 경우</u>	제13조(기한이익의 상실) <u>①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당연히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u> <u>1.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90일까지는 지연배상금 미부과)한 경우</u> <u>2.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연고관계,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u> <u>3.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u>	통지수단 및 방법 명확화(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준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②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회원은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익의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적 거래로 확인된 경우 ③ 회원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카드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은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1. 제2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 등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합니다) 및 동법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카드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회원에게 도달한 경우 회원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되,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회원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⑤ 카드사가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동법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통지 내용, 통지 방법 및 예외사유 등 제반 규정을 따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기한 이익 상실 예정일 관련 통지일 문구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기한 이익 상실 통지 시 제반 규정 준수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⑥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원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카드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카드사가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 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카드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14조(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① (생략) ② 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경위, 카드이용일시, 이용내용,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u>서면으로</u>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 ⑤ (생략)	제14조(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경위, 카드이용일시, 이용내용,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u>서면, 인터넷(회원에게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u>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통지수단 추가(신용카드 개인회원 표 준약관 준용)
제15조(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① (생략) ② 제①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부정사용 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u>분실·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현금인출은 신고시점 이</u>	제15조(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①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부정사용 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u>분실·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u>	현금인출 신고와 보상은 9조①에 따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③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주)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는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1만원 이하의 보상처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 ④ (생략)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③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주)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는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1만원 이하의 보상처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름
제21조(변경승인 등)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u>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u>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1 ~ 4 (생략)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변경할 경우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 게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u> 1. 각종 요율, 수수료, 연회비 등을 인상할 경우	제21조(변경승인 등)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u>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기존 회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 신·구조문대비표 포함)하고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신·구조문대비표 포함)하여</u>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까지 홈페이지 게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u>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부터 매월 알려드립니다.	통지수단 및 방법 명확화(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준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u>2. 결제방법, 소액신용한도 관련 대금결제일</u> <u>③ 제②항 제2호의 경우 카드사는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광고 또는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u> <u>④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u>	<u>1. 카드사가 할부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 각종 요율 또는 연회비를 인상할 경우</u> <u>2. 카드사가 결제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 등을 변경할 경우</u> <u>3.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할 경우</u> <u>③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고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방법 또는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u> <u>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u> <u>⑤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회원의 이용대금명세서 수령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 대상 회원에게 우편,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고, 통지 수령 후 이의제기 기간 내에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u>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는 경우 동 회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용대금 명세서의 수령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이용대금명세서 수령방법의 변경(변경예정 수령방법, 변경예정일자 포함) 2 통지 수령 후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이 제1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3. 이의제기 기간을 도과한 이후에도 회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용대금명세서 수령방법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 및 변경절차에 관한 안내	
제23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주))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3조(관할법원) ① 이 약관에 터잡은 거래에 관하여 카드사와 회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회원의 주소지 또는 카드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위 시정요청 반영(법이 관할법원을 정한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 조항 개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u>그러하지 아니합니다.</u>	

※ 변경부분에는 밑줄을 그어 구분